

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: 공급세대수의 3% 범위)

※ 특별공급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.

구분	내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</li> <li>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에 거주</li> <li>②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)</li> <li>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</li> </ul> <p>※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(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)</p> <p>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</p> <p>※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</p>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(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) 거주자가 우선합니다.</li> <li>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.</li> <li>•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'청약가점 산정기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 1)'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.(분양권 · 입주권 등 포함)</li> <li>• 국토교통부 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.</li> <li>•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 될 경우,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.</li> <li>•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•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 ·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(23.11.10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)</li> <li>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및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</li> </ul>